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911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피고가 2014. 10. 14. 한, 원고 A에 대한 2014년 토지분 재산세 5,817,090원 및 지방교육세 1,163,410원의 부과처분, 원고 B에 대한 2014년 토지분 재산세 1,483,450원 및 지방교육세 296,690원의 부과처분, 원고 C에 대한 2014년 토지분 재산세 616,720원 및 지방교육세 123,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 2. 서울 서초구 D 임야 225,1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A은 7/10 지분, 원고 B은 2/10 지분, 원고 C은 1/10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다),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212,783㎡가 사권제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 규정된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0. 14. 위 212,783㎡의 50/100인 106,391.5㎡를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하여 2014년 토지분 재산세 8,392,390원과 지방교육세 1,678,460원을 산출한 다음 원고들의 지분별로 안분하여 원고 A에게 재산세 6,149,680원 및 지방교육세 1,229,930원, 원고 B에게 재산세 1,578,480원 및 지방교육세 315,690원, 원고 C에게 재산세 664,230원 및 지방교육세 132,840원을 각각 부과 · 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0. 16.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6. 원고들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2. '이 사건 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전체 면적인 225,124㎡가 E 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데, 과세자료의 오류로 이 사건 임야 중 12,341㎡에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하여 경감이 적용되지 않아 2014년도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과세처분을 원고 A에 대하여 재산세 5,817,090원 및 지방교육세 1,163,410원으로, 원고 B에 대하여 재산세 1,483,450원 및 지방교육세 296,690원으로, 원고 C에 대하여 재산세 616,720원 및 지방교육세 123,340원으로 각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경정된 위 각 과세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 8, 1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redacted]장관은 1971. 8. 6.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redacted]구 F 일대 등을 도시계획시설인 'E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고, [redacted]시장은 1979. 7. 4. 지적 승인을 고시하였다.

2) 피고는 2006년경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E 도시자연공원 일대에 휴양시설인 G 쉼터(팔각정, 약수터, 화장실, 휴게실, 탁자 등이 설치되어 있다), 나무 계단 등산로 등을 조성하였고, 주말에는 양재역과 E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E 도시자연공원 일대에서 등산로 정비, 약수터 정비, 화장실 유지관리, 수목 식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안내판, 이정표 등과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E 도시자연공원을 관리하였다.

3) [redacted]시장은 2012. 10. 11. [redacted]구 F 일대 E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2020년까지 2,777,252㎡에서 [redacted]시 예산으로 사업비 344,693,000,000원을 들여 2단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redacted]시장은 2013. 3.경 E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2014. 4. 24. E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E 도시자연공원에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등산로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4. 6. 1. 현재 이 사건 임야 안에 등산로 4개가 지나가고 G 쉼터의 일부가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 10, 11, 13, 17, 19호증, 을 제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지방세법은 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산세 비과세 요건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으로 그것을 점유 또는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공용개시 행위가 있어야만 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에서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제107조 제1항 본문)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자(제107조 제3항)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의 소유자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없다면 그의 담세력은 현저히 낮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유 재산을 무상으로 1년 이상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한편,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처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과 재산세의 비과세 요건을 정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그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요건인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이 규정하는 공공용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국·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는데, 행정재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인 '공용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인 '공공용재산' 등이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공유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공유재산법 제5조).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제한되고(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본문,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 본문) 엄격한 요건 하에 사용·수익 허가가 이루어지나(국유재산법 제30조, 공유재산법 제20조),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공유재산법 제28조).

이러한 규정과 앞서 본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 등으로 사용·관리하려면 법령의 지정, 행정처분 등 공용개시 행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이 아닌 사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재산의 사용에 앞서 공용개시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문언을 보더라도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 중 공원시설이 설치된 부지는 2014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4. 6. 1.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E 도시자연공원은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제3조 제3호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다. 피고는 E 도시자연공원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휴게실 · 정자 등의 휴양시설, 화장실 등의 편익시설, 이정표 등을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시설은 모두 E 도시자연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원시설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는 2013. 6. 1. 이전부터 E 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된 토지인 이 사건 임야에 각종 공원시설을 설치 · 관리함으로써 E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고 있다.

나) 서초구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이전 소유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원시설이 설치된 부분은 E 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자라도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4조 제1항, 제2항),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제49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제53조 제2호, 제3호, 제54조 제2호, 제3호). 이에 따라 원고들은 E 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용 · 수익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야가 1년 이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계약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기본통칙에서 말하는 '계약서 등'은 증명 방법의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로만 공공용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고들에게 재산세 비과세 요건의 증명을 위하여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E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부지 전체에서 위 계획대로 사업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E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전체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 중 공원시설이 설치된 부분이 2014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E 도시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에게 제공된 것만으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중 위와 같이 공원시설이 설치된 부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임야 중 위와 같이 공원시설이 설치된 부지 이외의 부분은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등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될 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전체를 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대상으로 하여 2014년 토지분 재산세 및 위 재산세 납부의무를 전제로 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점유하는 면적, 즉 이 사건 임야 중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과세기준일인 2014. 6. 1.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한 면적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중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2014년 토지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 국유재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분수·조각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장의자등 휴양시설

라. 그네·미끄럼틀·사장등 유희시설

마. 정구장·수영장·궁도장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매점·변소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가"목 내지 "아"목 이외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3. "녹지"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도시자연공원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제5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당해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한다.

제6조의2(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제5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부칙 <제9860호, 2009.12.29.>

④(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도시공원법」(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자연공원의 개발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21조의2, 제48조의2,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17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끝.